

재사용 화환 표시제

!

-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Q&A

Q 재사용 꽃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장례-예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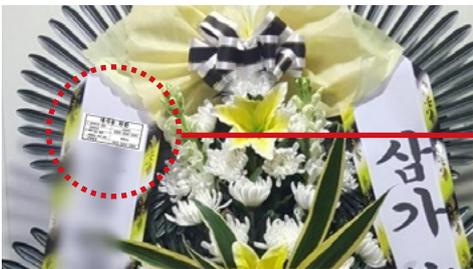
A 장례-예식장으로 판매하는 꽃바구니 형태의 '근조·축하 꽃바구니(화환)'도 생화를 재사용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대상입니다.

Q 장례-예식장에서 수거하여 업체 내에 보관·진열 중인 화환도 표시해야 하나요?

A 제작업체, 판매업체 내에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재사용 화환도 해당 화환 앞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풋말 또는 스티커로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고, 보관·진열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

1. "재사용 화환"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사이버몰(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재사용 화환	
☑ 판매자의 상호	0000
전화번호	000-000-000
☑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상호	0000
전화번호	000-000-000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란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란에 √ 표시를 해야 함



표시사항

1.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

-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본 **앞면의 왼쪽 상단**에 표시
- 글자 크기

리본 크기	리본의 폭이 12cm 이상인 경우	리본의 폭이 7cm이상 12cm 미만인 경우	리본의 폭이 7cm미만인 경우
(1) “재사용 화환”표시	50포인트 이상	40포인트 이상	20포인트 이상
(2) 그 외 내용 표시	25포인트 이상	2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리본의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리본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되, 직접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각인(새김도장)·소인(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

2.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환 앞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풋말을 고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
- 풋말, 스티커 크기 : 가로 20cm 이상 × 세로 15cm 이상
- 글자색 : 풋말 또는 스티커의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글자 크기 : “재사용 화환”표시는 **70포인트** 이상, 그 밖의 내용은 **40포인트** 이상

3. 사이버물(온라인물)으로 판매하는 경우

- 화환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고 표시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



위반시 과태료(표시의무자)

위반 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